#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00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김남국·이재정·신동근

김승원 • 오영환 • 천준호

진성준 · 홍기원 · 신정훈

장경태 • 권인숙 • 민형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나. 의원 본인, 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 다.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 라.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 마.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 바. 위원회는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될 때까지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직위 변경을 신청할 때까지 그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표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이 제한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 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2. 대리, 고문·자문·사외이사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다.
- ④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계약 체결의 제한) ① 의원은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

닌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물품·용역· 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의원 본인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제40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 2. 상임위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위법한 특혜를 주는 행위
  - 3. 상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게 하

는 행위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
-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선임하거나 개선해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2.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 와 관련된 법인 등을 대리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 능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3. 의원 본인 또는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 등의 주식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의장은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거나 개선하기 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요청 및 보고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2호에 따라 주식백 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상임위원이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대한 심사·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3.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자문·증언·감 정 등을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4.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감사·수사·조사를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5.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그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58조의4(주식 보유 위원의 심사·의결 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가 본인과 관련한 주식(「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 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주식으로 한 정한다)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그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경

우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된 주식이 처분된 경우
-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그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 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5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하였을 때
  - 3의3.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3의4.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알면서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4의2. 제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 4의3. 제5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개선된 사람은 제40조의3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전 설>  제29조의3(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사외이사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 | 현 행 | 개 정 안                                                                                                                                                                                                                                                                                                                                   |
|---------------------------------------------------------------------------------------------------------------------------------------------------------------------------------------------------------------------------------------------------------------------------------------------------------------------------------------------|-----|-----------------------------------------------------------------------------------------------------------------------------------------------------------------------------------------------------------------------------------------------------------------------------------------------------------------------------------------|
|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                                                                                                                                                                                                                                                                                                                             |     | 제29조의3(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 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사외이사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 |

<신 설>

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계약 체결의 제한) ① 의원은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가소관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
- 2.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물 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

   내의 친족(「민법」 제767조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의원 본인 또는 제1호에 해 당하는 자가 국회규칙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 영리행위 등 금지) ------다음 각 <u>호의 행위</u>-----
  -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 2. 상임위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이나 기관·단체에 위법한 특 혜를 주는 행위
  - 3. 상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 는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 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부당하 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

<신 설>

-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선임하거나 개선해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 등을 대리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3. 의원 본인 또는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관련된 법인 등의 주식 등을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의원이 해당 상임위
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
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등 사
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
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의장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개선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심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요청 및 보고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탁된 주식이 6개월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소속 상임위원

<신 설>

<신 설>

회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상임위원이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
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3 을 준용한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 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심사·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3.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자문· 증언·감정 등을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감사·수사·조사를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 로 그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 한 심사·의결 등을 하지 못하 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 다.

제58조의4(주식 보유 위원의 심 사·의결 제한) ① 위원회의 위 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가 본 인과 관련한 주식(「공직자윤

<신 설>

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무가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그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대한 심사·의결 등에 참여할수 없다.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 각한 경우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된 주식이 처분된 경우
-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

   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제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 한 심사·의결 등을 하지 못하           |
|----------------------------|
| 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            |
| 가를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
| 심사·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           |
| 다.                         |
| <del></del><br>]155조(징계)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u>3의2.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계</u> |
| 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
| 하였을 때                      |
| 3의3.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
| <u>때</u>                   |
| 3의4.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
| 결격사유를 알면서 변경 요청            |
|                            |

로 그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

|                    | 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4의2. 제58조의3제3항을 위반하 |
|                    | 여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
| <u>&lt;신 설&gt;</u> | 4의3. 제58조의4제3항을 위반하 |
|                    | 여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
| 5. ~ 16. (생 략)     | 5. ~ 16. (현행과 같음)   |